

임원 선임 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“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”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-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이사 또는 감독이사를 말한다.
- ②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『부동산투자회사법』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7에 따라 법인이사 1인 및 감독이사 2인 이상을 두며, 『부동산투자회사법』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.

제3조 (임원 자격기준)

- ①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다.
- ②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각 호와 같다.
 1. 횡령 또는 배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, 집행유예 또는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2. 이사회가 중요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행위 이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원으로 재직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
 3. 『부동산투자회사법』 제14조의6에 따른 감독이사의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

제4조 (확인절차)

회사는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자가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법규 적용 등)

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, 항, 번호 순서가 바뀔 시 변경된 개정안을 적용한다.